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2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학 부 모 연 수 자 료

·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함열중학교

목차

1.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근절 연수
2. 청렴교육 및 부정청탁금지연수
3.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4. 학부모를 위한 생활인권교육
5. 가정폭력 예방 방법 및 대처방법 안내
6. 안전사고 예방 교육
7. 교권보호 연수
8. 학생인권 연수
9. 디지털 성범죄
10. 양성평등 교육
11. 약물오남용 및 흡연예방 교육
12. 코로나19관련 대처 안내
13.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안내
14.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15. 아동학대 예방 교육
16.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
17. 장애 이해 교육

1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근절 연수

1.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4. 특별법 주요 내용

조항	구분		주요 내용
1조	목적		◦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2조	정의		◦ 교육관련기관: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제외 ◦ 선행교육 의미: 교육관련기관이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 선행학습 의미: 학습자가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5조	책무	학교장	◦ 학교 내 선행교육 지도·감독 ◦ 학부모·학생·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정기 실시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6조	책무	**학부모**	**◦ 자녀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각종 활동 참여, 학교정책 협조**
7조	책무	교원상담	◦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8조	금지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출제·평가 행위 금지(방과후학교 포함) -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내 대회, **입학 전 교과프로그램 및 반배치고사**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만 금지
9조	금지행위	입학전형	◦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교(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중 등): 해당 학교급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 실시 -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각종 자격증 등 반영금지 ◦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학교진도에 맞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선행학습을 하는 걸까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허와 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선행학습 제대로 이해하기

선행학습이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학습의 범위와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하지요.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 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이 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청렴교육 및 부정청탁 금지 연수

청렴교육

1. 용 어

가. 청렴교육

- 청렴교육은 청렴 성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반부패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위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하려는 행위 규범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나. 부패

-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돕는 모든 행위

<전통적 부패>- •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

<현대적 부패>- •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

• 불공정, 불투명, 이익충돌, 온정연고, 복지부동 ,책임회피・반공익

다. 반부패교육 - 청렴교육과 같은 뜻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교육이다.

둘째,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 윤리 도덕교육이다.

셋째, 사회의 부패 현상을 인식하고 반부패 의식을 형성하여 반부패 행동을 실천하고 하는 부패의식 개선교육이다.

넷째, 학교의 반부패 교육은 학생들의 부정부패 행동을 교정하는 교정교육이다.

2. 교직원 행동 강령

가. 어떠한 이유로든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청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 **공익을 우선**하겠습니다

3. 신고센터 안내

교직원이 위 사항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하셨을 경우, **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또는 익산교육지원청 부조리신고센터(☎850-892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주요골자

●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

1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 행위유형(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3 부정청탁의 금지

● 이해당사자(A)가 제3자(B)를 통하여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이해당사자(A)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제3자(B) : 과태료(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해당사자(A)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이해당사자(A) :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100만원 이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금액의 2~5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 **식사 : 3만원,**
  · **선물 : 5만원(농수산물 가공품 - 10만원)**
  · **경조사비 : 5만원(화환, 조화 - 10만원))**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3 학교폭력 예방

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학교폭력 유형

1)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2)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카톡, SNS), 소문 퍼뜨리기 등
3)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째려보기, 비웃기 등

다. 자녀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아이를 탓하면 안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무조건 지지해 준다.
2)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먼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한다.
4) 아이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다.

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기재하며 관리 및 삭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9호(퇴학)	-	계속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마. 자녀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부모(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게 맞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 후, 가해학생 부모님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사.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1)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신고하기
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국번없이 117(24시간), 피해사실을 설명, 긴급 상황시 경찰출동, 긴급구조.
3) 핸드폰 문자신고 #0117: 받는 사람을 #0117로 눌러 신고.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고 전송, 전송된 문자는 Dream 관리자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4)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접속

4 학부모를 위한 생활인권 교육

도덕성, 우리 아이의 경쟁력입니다.

☑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아이에게 선태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잘못은 묵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묵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의사소통,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나 – 전달법(I-Message) 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5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안내 연수

가. 가정폭력이란?

▶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 위협하기	·남성적 특권 이용
·협박(눈빛, 행동,물건파괴,애완동물 학대 등)	·부인, 비난
·고립(위치추적, 통제 등)	·정서적 학대(무시하기, 모멸감 등)
·경제적 학대(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자녀이용(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협박,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 화 조절하기 ▶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 스트레스 관리하기 ▶ 칭찬 한마디 하기

다.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라.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이렇게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마.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알게 되었다면 학교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6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가. 게임중독 예방

1) 자녀와 함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규칙 정하기
2) 자녀가 가입한 웹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 알기
3) 온라인에서는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4)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
5) 자녀 수준에 맞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서비스 설정하기
6)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7)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상기 시켜주기
8) 디지털기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기
9)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하기
10)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나. 교통사고 예방

1) 부모님의 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문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2) 차에서 내리고 탈 경우에는 교외 주차장에(관사 쪽) 주차한 후 승·하차 합니다.
3) 자녀가 차에서 내린 후 자녀의 안전을 꼭 확인 후에 차를 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차가 출발할 때 주변에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부모님부터 교통질서를 잘 지켜 우리 탄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학기 대비 실종·유괴 예방 수칙

1) 비상 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합니다.
2)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3)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씁니다.
4)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합니다.
6)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7)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8)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라. 화재 예방

1)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알아봅시다.
   o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
   o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2) 피난을 위한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도록 하시고, 옥상은 피난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은 개방하여야 합니다.
3)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
   o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하고, 유사시 피난 대피로와 피난장소 평소 숙지하세요.
   o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

7 교권보호 연수

가. 교권침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나. 현행 교권 관련 법률

1) 헌법 제 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2) 교육기본법 제 12조(학습자)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 교권 침해 대표적 유형

1)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2)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3)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4)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5)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7)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 보상, 추가 보상 요구 8)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9)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10)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11)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라. 교권 침해 결과

1) 자녀는 ① 학습권침해로 정상적 교육활동에 저해 ② 학교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저해 ③ 담임 교체 등 2차 피해 발생	2) 교사는 ①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② 학생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③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한 학생의 교권 침해 →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 교사의 자존심 상처(무기력, 회피) 학부모 고충, 피해 해결 방법 → 지혜로운 대처, 증빙자료 준비	

마. 교권 침해 행정적 사항

1) 교사를 폭언이나 폭행할 경우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처분이나 학교처벌과 별도로 모욕죄나 상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설사 사실인 내용이라도 카톡, 밴드 등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

8 학생인권 연수

가. 인권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

1)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가) 차별금지

○ 조례 제5조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나)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다) 프라이버시권의 존중

○ 복장·두발 등 용모의 자유,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 관리의 자유, 일기장 등 개인비밀 열람금지, CCTV 촬영제한, 개인정보의 비밀과 관리의 자유 등(조례 제11조, 제2조)

- 조례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인정하지는 않고, 학생들과의 합의 과정이 적법하고 그 제한의 사유가 교육목적에 부합하며,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

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권리

나.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1) 학생인권 보장과 제한의 원칙

가) 인권의 최대 존중 원칙

○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보장된 천부적 권리

○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보장, 최소 제한 적용

나)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

○ 학생인권은 적법한 범위 아래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 가능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학생이 참여하고 합의한 규칙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교육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야 하며(수단의 적정성)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침해의 최소성)

2) 학생인권과 학생의 책무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학습자의 의무 조항을 거듭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책무와 의무 】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3)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4)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내질서를 존중할 의무
5) 교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존중할 의무

3) 교권과 학생인권의 상생 방안

가)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하는 개념인가?

○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가치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양립 가능한 가치이다!

- 학생인권의 보장의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나, 교권 보호의 문제는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할 교사의 직권을 어떻게 공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학생인권의 보장 강화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임
- 교사는 일부 학생들이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구제하는 학생인권의 1차적 옹호자!
- 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을 강조하여 교권을 훼손하는 규범이 아니라 교사의 옹호자 역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학생 지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 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타인 배려' 또는 '예절 준수'에 미흡

○ 철저한 인권교육(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상생 방안)을 통해 학생인권의 본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올바른 교권의 정립은 무리한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 존경으로 이루어질 때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입니다.

1.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2.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9 디지털 성범죄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전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063-280-8133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063-280-8149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전문상담 기관 안내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익산	익산 성폭력 상담소(남중동)	834-1366	개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수사 및 치료 통합지원)	859-1375	원광대병원

10 양성평등 교육

성 평등 – 서로서로 존중해요!

성 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 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생활 속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 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막습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 가족이 만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예) 남자는 아파도 티내면 안돼~ 눈물 뚝해.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지~

◎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2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배우고 따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남자다운 척', '센 척'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위치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오는 나만 비켜가지 않습니다.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내가 존중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 성 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 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다움' 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성 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 출처: 「청소년 성평등 가이드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1 약물 오남용 및 흡연예방 교육

미국 청소년층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과 이와 유사한 다양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근 잇따라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하였고,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용 증가 및 학교의 금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종담배의 특성과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리며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쥴(JUUL)이란?

- USB 모양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 샤프심통 크기로 한 손에 잡히는, 혹은 한 손 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가 특징
- 망고, 민트 등 여러 가지 맛을 추가하여 청소년을 유혹 함.

2. 담배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임!
- 담배제품에는 다량의 니코틴이 들어있으며 이는 성장기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

- 쥴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은 니코틴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 또한 청소년 시절 니코틴 사용은 다른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향후 청소년들이 일반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는 청소년들이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은 25세까지 발달하는 청소년의 두뇌 발달을 저해하는데 특히 집중, 감정, 공부, 충동조절 영역에 해를 끼쳐 건강한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뇌 안의 신경세포들 간의 기능적 연결(시냅스, Synapses)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니코틴이 시냅스 형태를 변화시켜 뇌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합니다.

3. 청소년 흡연의 특징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자료 참고)

-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 학교생활 :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고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을 하게 됨.
- 용돈 :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음.
-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 느낄수록 흡연을 많이 함.
- 정 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4.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 쥴(JUUL)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기
- 아이들과 함께 담배 사용의 해악에 대해 같이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세요!

* "쥴 등 신종담배는 일반 담배를 대신하는 안전한 제품이야"
  →"쥴 등 신종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아.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특히 상당량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 "니코틴 그게 뭐 어때서요!"
  →"니코틴이 뇌에 전달되면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특히 너희처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두뇌발달을 방해하지"
* "그냥 향이 좋아서 한건데…"
  →"중독물질을 숨기기 위해 맛과 향을 좋게 한거야. 청소년이 사용하면 두뇌발달을 방해해"

※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은 금연을 통해 환경적으로 자녀들이 담배와 멀어지고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가정에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라고 단정하시기 전에 자녀와 솔직한 대화창구를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12 코로나19관련 대처 안내

1. 등교 전 해야 할 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등교 전 각 문항 찬찬히 읽고 참여완료 후 등교 - 자가진단 내용 개선(2/28~) ① 확진 내용 입력 (학생(교사)이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신속항원검사 문항 추가 (기존 진단 문항을 조정하고 학생(교사) 본인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문항 추가)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비말차단, 일회용, 면 마스크 등 사용자제
신속항원검사 권고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 권고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권고-의무사항 아님)

*** 등교시 반드시 본관 1층 현관 통해 발열체크 후 교실 입실**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3.14.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②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3.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입력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 -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검사결과 확인방법: 자가진단 결과 입력, 보호자 확인, 음성확인서, 키트 지참 등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입력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방문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 이동시 주의사항: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자제,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입력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보건소 안내에 따라**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격리. 격리해제 후 등교가능 - 격리 후 3일간 주의 권고: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4.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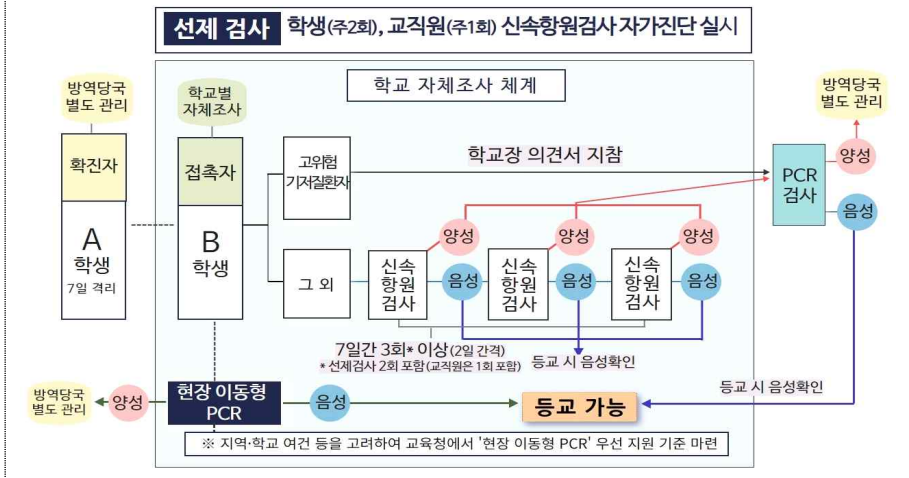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그 외)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ex)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 3회 검사 중 2회(교직원은 1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5.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안내

-학교홈페이지 탑재된 동영상 참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1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미세먼지 관련 출석인정 안내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질병결석'으로 인정

14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신청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 관련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 119구조대 연락 또는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 지체 없이(통상 7일 이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통보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 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을 이용하여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함.(지급 시 결정통보서 발송)

*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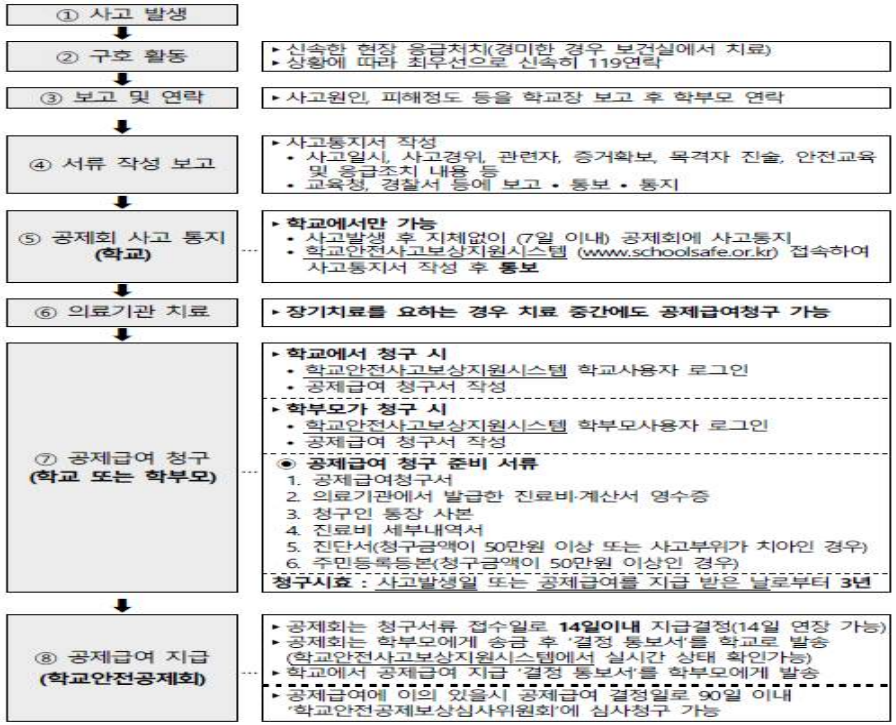

15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학대, 정의와 유형 및 후유증

아동(청소년)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 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동(청소년)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 재입니다.

1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와 유형

가. 아동(청소년) 학대의 정의

아동(청소년)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아동(청소년) 학대의 유형

1)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의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등이 있다.

2)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의 예로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및 청소년 노동 착취), 다른 아동(청소년)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3)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의 예로는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

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방임**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청소년)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청소년)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이 있다.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청소년)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적 방임**으로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적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청소년)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다.

2 . 아동(청소년) 학대의 후유증

가. 신체적 후유증

1) 신체 손상

맞아서 생긴 피부에 **멍든 상처부터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 등** 매우 다양하다.

나. 중추신경과 대뇌 후유증

1) 신경생리 기능의 변화

가)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증가로 **투쟁-도피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심박수, 혈압, 대사율, 각성상태를 증가시킨다.

나)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로 부주의, 과각성, 정신증적 증상, 물질 남용, **기억과 학습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다) 세로토닌의 농도 감소로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이 증가되고, **주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라) 스트레스로 지속적으로 증가된 코르티솔은 해마의 위축,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

2) 뇌 발달의 저해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유전과 환경으로, 환경요인 중에서는 특히 아동기 경험이 중요하다. 학대와 방임은 아동기 외상의 가장 심한 형태로 스트레스 관련 생리적 반응(신경내분비, 교감신경)을 비정상적으로 흥분 시킴으로써 정상적 뇌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즉, 전체 **뇌 크기의 감소, 뇌실의 확장, 뇌량의 감소**가 보인다. 또한 편도체의 활성 과다로 사소한 일들도 너무 과도하게 위험을 감지하여 **과각성, 두려움, 공포, 불안**에 싸이게 된다. 전전두엽에 증가되는 도파민으로 **편집증상,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 병리

학대의 결과로는 신체손상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또는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후유증을 갖는다. 흔히 임상에서 위축되거나 잘 놀라거나 혹은 공격적 행동이나 가변적인 기분 상태를보인다. 혹은 우울감, 낮은 자긍심,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발달지연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래관계의 곤란, 자해 및 자살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1) 지능, 인기기능 저하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은 **지능,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보인다. 지능은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의 기간이 길수록 저하된다. 이

2) 정서기능

가) 감정조절 기능의 저하 및 이상 아동(청소년)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저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은 아주 위축되거나 혹은 공격적인 양극단으로 치우친다.

나) 자기개념의 손상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력감'**이다. 아동(청소년)은 대개 슬프고, 기가 죽고, 자기 멸시에 빠진다. 이 같은 부정적 자기개념은 만성적인 신체 및 정서적 손상에서 기인한다, 반복적인 처벌, 구타, 위협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은 실제로는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된다.

3.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주의사항 - 112로 학대신고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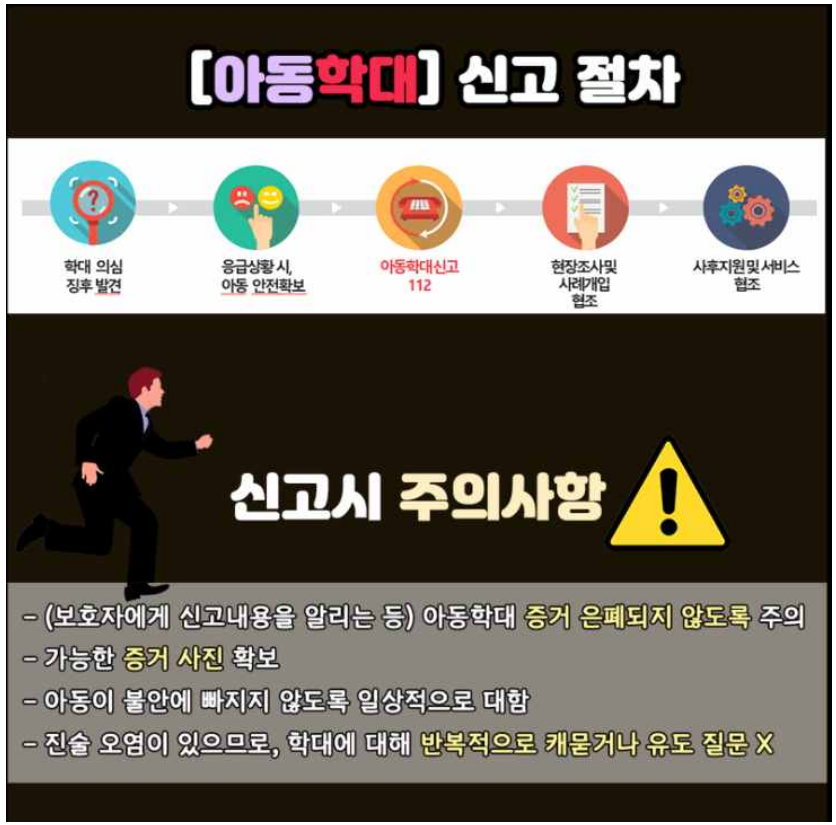

16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교수업이 제한되고 친구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조차 금지시키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나 선생님보다 대개 친구인데,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대화시키면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떤 점을 관찰해야 할까요?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언어>

- □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함
- □ 자기비하적인 말을 함
- □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함
- □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

<행동>

- □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 □ 수면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잠. 또는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일찍 깸)
- □ 식사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함)
- □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마침
- □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
- □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 (술, 담배 등)

<정서>

- □ 감정상태의 변화 (죄책감, 외로움, 무기력 또는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멍한 모습)
- □ 대인기피, 흥미상실 (평소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는 즐기지 않는 모습. 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 학교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사망 학생은 최소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1. 자살에 대해 질문하기

자살위험징후를 알아차렸을 때는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질문을 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위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생각, 자살동기,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순으로 질문을 하여 판단을 하고, 자해 여부도 물어봅니다.

자살생각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 마음에 점수를 준 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자살동기	"어떤 이유 때문에 죽고 싶을까?", "어떤 점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자살계획	"죽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니?" "막연히 죽고 싶은 생각만 있니?"
자살시도	"이전에 죽으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니?"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니?" "실패해서 마음이 어땠었니?"
자해	"자해를 하고 있지는 않니?" "자해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떠니?"

2. 자살생각이 있는 학생과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

자살생각이 있는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도 항상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학생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생각을 부정하거나, 자살에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거나, 참아야 한다고 훈계를 하거나, 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밀이 보장이 될 수 있고, 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생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움이 되는 대화법

"OO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OO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 하겠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법

"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누구나 그 정도 고통은 다 겪어"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까지 하니?"

"설마 자살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

장애는 개성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얼굴과 몸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저마다 소중한 우리의 개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로 표현하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말로, 또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집중력이 강하며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 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잘하거나 모두 다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고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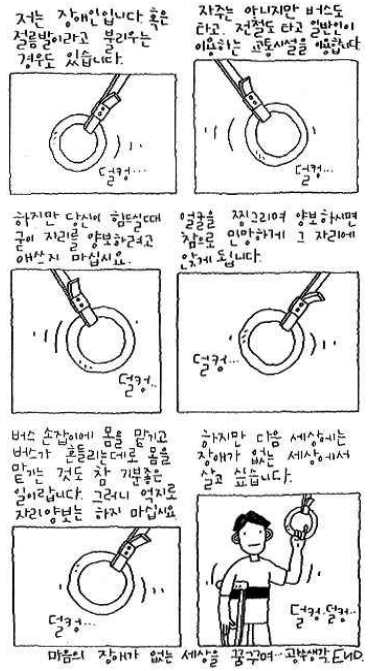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장애 이해 영화		
허브	천국의 속삭임	맨발의 기봉이